

사회보장정보 Issue Paper

발행인 노대명 | 발행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발행일 2023년 9월 11일

제도·전달체계

정보시스템·ICT 신기술

사회보장데이터 분석

사회보장 기획 이슈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 | 김인수 부연구위원
사회서비스정보본부 사례관리정보부 | 이윤호 과장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사회의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독거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은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20년부터 독거노인과 이동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참여자의 협력과 노력 덕에 사업의 정착과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제는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고,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논의들을 살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고는 2020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的 사업성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들어가며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전환 및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3%로 나타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7년 만인 2017년 14.2%로 나타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되어 2019년 8월에는 15.2%, 2020년 6월에는 16.0%, 2021년 3월에는 16.7%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말 기준 17.5%로 증가하였음
 -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6%가 65세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노인층의 1인 가구(이하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21년 33.4%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은 주민등록 시스템 기준 2,347만 2,895가구 중 946만 1,695가구로 40.3%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65세 이상 1인 가구 역시 2016년 1,270,519명(18.8%)에서 2022년 1,875,270명(2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로 인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재해나 안전사고로부터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존의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와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임

II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이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 차원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응급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상황발생 시 대상자 안전확인 및 대응조치, 안전교육 제공, 사후관리 등을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맥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화재나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 장비로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로 구성되어 있음
 - 이를 통해 독거노인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지하고, 활동량이 없을 경우 현장의 응급관리요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여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119에 신고되도록 되어 있음
 - 아울러 대상자 본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호출기를 통해 간단히 119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구급대원은 대상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출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총 3차례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각 차수별로 5년간의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1차 사업은 2020년도에 시작하여 2025년까지 진행되며, 2차 사업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3차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각 5년간 진행될 예정임
 - 각 차수별로 대상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총 30만 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실제 홀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대상자 판단의 요소가 됨
 - 독거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이나 건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함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독거 여부, 생활환경 취약가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대상자 선정이 가능함
 -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현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 현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맥내장비는 2008년 최초 보급되었으며, 2020년부터 차수별로 신규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구형 장비는 철거하게 되며, 신형장비를 차수별로 신규 개발하여 보급하게 되고, 대상자도 10만 대씩 총 30만 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23년 4월 현재 전국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장비는 총 175,740대 임
 - 2020년 시작된 1차 사업의 경우 총 91,626대가 설치되어 목표로 하였던 10만 대 설치에 91.6%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2021년 시작된 2차 사업의 경우 총 82,400대가 설치되어 목표 대비 약 82.4% 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2022년 시작되는 3차 사업의 경우 2022년 장비개발이 완료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총 1,714대가 설치되었음

<표 1> 연차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장비 설치 현황

구분	계	2020년 장비	2021년 장비	2022년 장비
대상가구 수	200,909	95,962	99,924	5,023
설치가구 수	175,740	91,626	82,400	1,714
설치율(%)	87.5	95.5	82.5	34.1

*2023년 4월 말 기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현황
 - 2022년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맥내장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시기로 1차 사업(2020년)의 장비 설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기임
 - 2022년 12월 말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대응한 전체 응급상황은 24,232건임
 - 이중 응급통화가 17,7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재예방 6,265건, 응급호출이 236건, 가스 사고 예방이 17건으로 나타났음
 - 2023년 운영현황으로는 1분기(3월 말) 기준 응급통화가 4,8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예방

2,306건, 응급호출 179건 순이었음

- 2023년 1분기와 2022년 전체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23년 1분기가 2022년 대비 더 많은 응급상황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응급호출은 1년 중 1/4에 해당하는 기간만 운영한 것임에도 2022년 전체 발생 건수 대비 75.8%의 운영 현황을 보이고 있음
- 화재예방의 경우 2022년 대비 36.8%, 응급통화는 27.4%의 운영실적을 보이는 등 2023년 운영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0%가 넘는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운영이 점차 안정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과 이동불편 장애인에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현황

구분	응급상황				
	계	화재	가스	응급통화	응급호출
2022년	24,232	6,265	17	17,714	236
2023년 1분기	7,335	2,306	-	4,850	179
'22년 대비율(%)	30.3	36.8	-	27.4	75.8

*2023년 3월 말 기준

III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의 성과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성과

- 응급안전암심서비스는 2020년 신규장비가 보급되기 시작되어 4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으로 직접적인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는 사업의 전후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편익을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신규 택내장비가 보급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재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해야 하는 특성상 직접적인 평가는 어려움이 존재함
 - 특히 각 차수별 1차 년도는 기기의 개발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며, 2차 년도부터 본격적인 게이트웨이 등 장비 보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행기간이 짧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나타나는 비용편익을 크게 상시 모니터링 대체에 따른 비용 절감과 화재 예방 등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상시 모니터링에 따른 대체 비용 절감은 해당 제도가 운영되지 않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화재 예방 등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편익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편익으로 절대적인 고정편익이 아니라 사건 발생확률에 기반한 편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분석에서는 2022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그 편익을 추정하고자 함

- 2022년은 1차 사업(2020년 시작)이 본격적으로 운영될뿐만 아니라 2차 사업(2021년 시작)의 맥내 장비 설치가 일정 수준에 이르는 시기로 볼 수 있음
- 이에 2022년 한 해 동안 달성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함

상시 모니터링 대체에 따른 편익

- 상시 모니터링 대체에 따른 편익은 안부전화와 맥내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상시 모니터링 대체에 따른 편익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해 안부전화나 맥내 방문과 같은 업무가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와 맥내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비를 산출함으로서 절감되는 경비를 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상시 모니터링으로 안부전화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절감액은 2022년 기준 연간 약 2,613백만 원 수준임
 - 안부전화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가 현재 건강 및 생활 등에 특정 이슈 없이 무사히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임
 - 그러나 유선전화를 활용하는 한계상 서비스 대상자가 집안에 상주하지 않을 경우 통화율이 낮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경우 유선을 통한 안부전화(주 2회) 보다 정확하게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안부전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
 - 이 경우 주2회 기준 연간 52주를 기준으로 할 때 1명의 대상자에게 약 104회의 안부전화를 하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1회당 10분의 전화통화(KT기준 1분당 14.3원)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4,872원이 발생하게 됨
 - 1인당 안부전화 절감액 = 1인당 통화 횟수(104회) × 1회당 통화금액(143원) = 14,872원
 - 1인당 통화 횟수 : 52주(연간) × 주 2회 = 104회
 - 1회당 통화금액(KT 기준) : 14.3원(3분당 42.9원) × 한 통화당 10분 = 143원
 - 이를 전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로 환산하면 연간기준 약 2,613,605,280원을 절감하게 됨
 - 안부전화 절감액 = 2,613,605,280원
 - 1인당 절감액(14,872원) × 전체 대상자(175,740명) = 2,613,605,280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맥내 방문에 대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연간 약 5,061백만 원 수준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하는 직접 확인 빈도가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직접경비 절감이 가능함
 - 맥내 방문으로 인해 나타나는 직접경비는 주로 방문을 위해 이동하기 위한 교통비에 해당함
 - 맥내 방문에 따른 교통비를 대중교통(간선버스, 편도 1,200원) 수준으로 산정할 경우 대상자 1인당 연간 28,800원이 발생하게 됨

- 1인당 방문비용 절감액 = 1인당 반문 횟수(12회) × 1회당 교통비(2,400원) = 28,800원
 - 1인당 방문 횟수 : 12개월 × 월 1회 = 12회
 - 1회당 교통비 : 간선버스(1,200원) × 2회(왕복) = 2,400원

- 이를 전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로 환산하면 연간기준 약 5,061,312,000원을 절감하게 됨

- 댁내방문 절감액 = 5,061,312,000원
 - 1인당 절감액(28,800원) × 전체 대상자(175,740명) = 5,061,312,000원

▣ 화재 예방 등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편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편의과 화재로 인한 신체손상 및 사망 예방에 따른 편의이 존재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된 2020년 이후 해당 장비를 통해 화재신고가 발생한 건은 총 6,265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총 예방편익은 최대 1,058,785백만 원이며, 최소 317,635.5백만 원임
 - 2023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살펴보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69백원으로 나타났음
 - 이를 화재에 따른 소실율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소 화재를 기준으로 1,058,785백만 원의 예방편익이 발생하였으며, 부분소 기준 최소 317,635.5백만 원의 예방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표 3> 화재 소실율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방 편익

구분	소실율	화재예방(건)	주택단가*	예방 편익
전소	100%	6,265건	169백만원	1,058,785백만원
반소	50%		84.5백만원	529,392.5백만원
부분소	30%		50.7백만원	317,635.5백만원

*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보도자료(2023.3.22.)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 기준 공동주택 전국 평균가격 및 소실율에 따른 피해액 산정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화재 예방으로 신체손상 및 사망 등을 예방한 인원은 약 1,151명으로 추산됨
 -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시행된 2020년 이후 발생한 화재예방 신고 건수는 6,265건임
 -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주택화재현황」을 대입해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화재건 중 약 18.37%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화재신고 예방 건수로 대입해 보면 약 1,151명의 인력이 화재예방을 통한 신체손상 및 사망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음

- 화재사망 예방편익 : 연간 화재신고에 따른 예방건수(6,265건) × 화재발생 시 사망비율 (18.37%)* = 1,150.9명(약 1,151명)

* 소방청 「최근10년간주택화재현황」의 화재발생시 사망비율(2021년 기준)

IV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 2020년부터 시행된 응급안전암심서비스는 아직 운영 초기의 제도로서,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아를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대상자 모집의 문제, 사업자와 응급관리요원과의 불명확한 업무분장, 일원화 되지 않은 사업자 및 장비, 예산 집행의 문제, 낮은 월 사용료로 인한 문제, 조밀한 사업 집행으로 인한 문제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대상자 모집의 문제점
 -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대상자를 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대상자 모집을 지역센터(거점센터 포함)에 일임하고 있어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안내에는 대상자 모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상황에서는 현장의 응급관리요원과 지역센터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업이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사업자와 응급관리요원과의 불분명한 업무분장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응급안전요원과의 업무분장이 불확실하여 사업자의 업무를 응급안전요원이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주로 장비의 철거, 배터리 교체와 같은 A/S 등에 대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해당 활동에 대한 비용지급 등에 대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장비철거 시 발생하는 손실과 망설, 현장훼손에 따른 민원 등에 대하여 응급안전요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일관되지 못한 사업자 및 장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1차부터 3차에 해당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 사업자가 모두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매년 보급되는 장비가 다르며, 사업 운영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
 - 특히 같은 지역 내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선정차수별로 다른 장비가 지급되거나, 다른 사업자로 인한 A/S 지역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 대한 불공평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예산 집행의 문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경우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운영되는데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낮은 월 사용료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 지자체에서는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사업자는 이를 활용하여 통신비, 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낮은 단가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장비의 공급 및 설치, 철거를 위한 전국적인 유통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낮은 사업단가로 인해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현장 업무를 응급관리요원이 대신 수행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밀한 사업 진행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차부터 3차 사업까지 진행되면서 1년 단위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각 차수별 5년간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1차 사업이 시행되고 안정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2차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전 차수 사업의 효과성 평가, 사업 운영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추진 등이 이루어질 시간적 여유 없이 업무가 추진 되면서 문제점 개선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차수 사업 추진으로 동일한 문제가 중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 개선 방향

● 서비스 대상자 확대

- 현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로 제한되어 있는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상자로 확대가 필요함
- 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구체적으로 단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2인 부부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시골지역의 경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부부 2인 가구이기는 하나 부부가 모두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인 경우가 다수 존재함
- 실제로 최근 주택 화재로 인해 부부 2인 중 1명만 탈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거동불편 2인 가구에 대한 응급 재난 상황 사전 예방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함
- 또한 기기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중장년층 독거노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임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의 경우 단순히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장년층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사업 확대도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월 사용료의 현실화

- 현행 월 1만원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증액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기의 통신비, 장비의 보급 및 수리비용 등으로 충당되는 사용료로는 현실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환경(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대상자의 상태와 활동에 대한

정밀한 계측 등)에 따른 장비의 업그레이드 등을 감안할 경우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이고 빨빠른 A/S 진행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적정한 사업 단가 산정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현실적인 차원의 사용료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임

● 타 사업과의 연계 또는 통합 가능성 논의 필요

- 노인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사전적 예방 차원의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노인층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활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AI.IOT 기기를 활용한 건강모니터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두 사업 모두 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사업이므로 공동 대상자의 경우 기기 설치 등에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두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된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고, 노인의 생활 및 건강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는 맞춤형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존재하기도 함

●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는 실시간에 가까운 형태로 축적되고 있음
- 그러나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나 정책 효과성 분석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동안의 사례를 바탕으로 방대하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 생성 등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건강정보 및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돌봄, 건강 서비스 등) 제공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차수별 사업이 조밀하고, 단기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함
- 중장년층 및 노인층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독사 발생은 선제적 관점에서 안전사고 및 위험으로부터 예방 목적으로 운영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같은 사업의 지속적인 투입을 필요로 함
- 이에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최대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의 제도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할 것임
- 사업의 목적, 대상자, 재원 마련 방식, 타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는 형식의 사업 운영이 필요함



결론 및 시사점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해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임
-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비추어 볼 때 독거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목적은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임
- 특히 단시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지출을 절감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한 성과를 이루어 볼 때 지속적인 운영 및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에 현시점에서 제도가 가진 비용편익 이외 다른 여러 효과를 살펴보고, 필요한 재원을 정확히 산출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타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관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및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종관(2016), “독거노인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수용요인 연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종관, 이준영(2015),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디지털융복합연구」, 13(1): 67-76.
- 김수완, 임정원, 최종혁(2021), “복지기술은 사회 혁신인가: 독거노인을 위한 기술기반 돌봄서비스 사례 연구”, 「비판사회정책」, 71: 7-41.
- 김수희 외 3인(2022), “영상보안 구조 기반의 지능형 독거노인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6(1): 639-641.
- 김준식 외 5명(2022), “독거노인 생활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30(2): 653-654.
- 김지연, 고영준(2018), “고령자의 안전생활을 위한 ICT융합 서비스디자인 시나리오 제안”,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17(3): 129-139.
- 보건복지부(2018), “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18~'22)”, 보건복지부.
- _____ (2020), 「2020년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맥내장비 10만대 보급”, 2020. 09. 08.
- 송병진, 문영일(2021),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한국통신학회지」,

38(12): 35-40.

이연희(2018),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형선 외 4인(2022), “CSI 데이터를 활용한 독거노인 응급상황 감지 시스템”, 2022년도 한국통신학회 추계종합학술대회 발표자료

최종혁, 임정원, 김수완(2021),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주요 쟁점과 방향성: 현장실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1-34.

허수경, 임수정, 정종화(2016), “사회적 보호체계로서의 응급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독거노인·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20(4): 31-54.



04554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대표전화 02-6360-6114 팩스 02-6360-6360 www.ssis.or.kr

집필자 김인수 부연구위원, 이윤호 과장
문의 02-6360-4637, 548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